



제264회 임시회
2007. 10. 18(목)

건설문화위원회 소관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문화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7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07년 10월 일

3. 제안이유

-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중 개정된 법조항 및 내용 정비
-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하천 사용료 산출 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국유지와 형평 유지

4. 주요내용

<제정경위>

- 현행 조례는 2003.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료 조례개정 권고(※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시, 점용료 산정기준인 농지소득 금액의 5/100를 토지가격의 1/100로 권고)

<주요내용>

- 하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하천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(안 제3조)
-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시, 점용료 산정기준인 “농지소득 금액의 5/100”를 토지가격의 1/100”로 함

5. 검토의견

-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
- 하천점용료 산출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점용사용료의 부과방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
 - 농지소득금액의 5/100에서 토지가격의 1/100로 하고자함.
- 일부 점용료 부과시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증가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
-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